

[별표 4]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5.16>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④ 삭제 <1996.12.31>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2. 인력개발	비용 아. 삭제 <1996.12.31> 자.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차. 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삭제<1996.12.31> 다.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사. 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